구 분	내용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11조(문화지표 개발 및 평가 등) 시장은 문화 현황과 발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영역별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가. 문화정책 지수: 문화정책의 중요성 인식 정도와 정책의 수립·실행·예산 집행 등에서의 적정성 나. 문화인력 지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 인력들의 양성 및활성화 정도와 시민 대비 문화 인력의 적정성 다. 문화활동 지수: 시의 문화 활동 지원 현황과 지역 예술인 및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 현황라. 문화기반조성 지수: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지역 분포도와 그 활성화 정도 마. 문화지원 지수: 문화유산, 문화 자원 등의 현황과 문화자원의관리 및 보존 정도 바. 문화하유 및 복지 지수: 시민의 문화 향유 환경 조성 및 실질적인 문화 향유 계층의 분포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 문화도시라 함은 구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을 <b>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 성,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산업의 육성,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b> 으 로 제시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을 제시 문화예술 진흥, 시민문화진흥,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 시를 조성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자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